

# 망원나들목 체육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0-115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10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안 이유

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건립된 망원나들목 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 제1항에 의거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

## 2. 주요 내용

### 가. 민간위탁의 목적

- 1)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주민 만족도 제고
- 2) 탄력적 인력배치 및 운영과 시설관리의 통합으로 예산 절감

### 나. 민간위탁의 내용

- 1) 위탁운영 시설현황

구 분	망원나들목 체육관			망원나들목 테니스장
위 치	망원동 460-5 일대 (망원나들목 공영주차장 B동 옆)			망원동 460-5 일대 (망원나들목 공영주차장 A동 상부)
면 적	995.79㎡ (건물 연면적)			2,040㎡ (15m × 136m)
주요시설	1층	758.50㎡	다목적체육관, 화장실, 사무실	테니스장(4코트), 조명탑(4개) 관리동(컨테이너 1동)
	2층	163.79㎡	헬스장, 샤워장, 탈의실	
	3층	73.50㎡	기계실	
위 치 도	별첨(붙임#1)			

## 2) 위탁기간

- 망원나들목 체육관 : '21. 1. 1. ~ '22. 12. 31. (2년)
-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: '21. 1. 1. ~ '21. 12. 31. (1년)

### ※ 위탁기간 단기 사유

- 위탁기간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5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내로 가능하나, 위 시설은 신규 시설로 단기 위탁을 통한 운영실적 및 개선방안 모색 필요
- 망원나들목 체육관은 위탁 시점('21.1.1.)으로부터 3년 이내인 회계 연도 말('22.12.31.)까지로 위탁기간을 정함
- 망원나들목 테니스장은 수탁기관으로부터 매년 위탁료를 징수받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단기간 위탁을 통한 운영실적(수지율) 분석이 필요하기에, 위탁 시점('21.1.1.)으로부터 '21.12.31.까지로 위탁기간을 정함

## 3) 위탁사무 범위 : 망원나들목 체육시설의 운영·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

- 시설운영 : 프로그램 편성·운영, 시설대관, 강사채용, 회원관리, 수강료 징수, 청소 등
- 시설관리 : 시설물 및 부대시설 유지 관리

## 4) 소요예산(세부내역 붙임#2 참조)

- 망원나들목 체육관 : '21년 400백만원
  - 연간 운영수지 적자 예상되어 사용료, 대관료 등 구 세입으로 귀속처리 후, 수탁기관에 세출예산(민간이전) 편성·지출
-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: 없음
  - 연간 운영수지 흑자 예상되어 수탁기관으로부터 매년 위탁료 징수

## 5)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시설별 공개모집

## 6) 수탁기관 선정주체 :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(별도 구성)

### 다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4조, 제15조 등에 따라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관리, 운영을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
- 생활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

## 라. 추진 일정

- 2020. 11. : 민간위탁(수탁기관 선정)계획 방침 수립
- 2020. 11. ~12. : 공개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
- 2020. 12. :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위탁운영 계약 체결
- 2021. 1. 1. : 시설 개관(운영 예정)

※ 추진 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#### <지방자치법>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

나. 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당 등 공공교육·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#### <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>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.

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,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.

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#### <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>

제6조(생활체육시설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체육시설의 위탁 운영)**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 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**<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>**

**제4조(생활체육시설의 설치·운영)**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·군·구 :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·외 체육시설
  2. 읍·면·동 :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
-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**<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>**

**제4조(체육시설 관리·운영)** ① 체육시설은 구청장이 관리·운영을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**제15조(운영의 위탁)**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또는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- ②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.
- ③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위탁의 연장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16조(수탁기관 선정 기준)**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, 전문가 등을 포함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·기구·장비·시설 및 기술수준
  2.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
  3. 재정적 부담능력
  4. 책임능력, 공신력
- ②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되, 체육시설의 특성상 면허 또는 경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선정 내용, 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④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. 다만, 체육시설 안의 세부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**제17조(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)** ①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.

②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학계, 법조계, 언론계 등 전문가 : 1~2명
2. 해당분야 전문가 및 주민대표 : 1~2명
3.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: 3명
4. 관계 공무원(단,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.)

③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

#### <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>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 등)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5조(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나. 기타사항 : 연간 위탁금액 산정 추계(붙임#2 참조)

- 붙임 1. 망원나들목 체육시설 위치도 1부.  
2. 망원나들목 체육시설 연간 위탁금액 산정 추계 1부. 끝.

# 망원나들목 체육시설 위치도



[붙임 2]

## 망원나들목 체육시설 연간 위탁금액 산정 추계

운영개요

구 분	망원나들목 체육관	망원나들목 테니스장
위 치	망원동 460-5 일대 (망원나들목 공영주차장 B동 옆)	망원동 460-5 일대 (망원나들목 공영주차장 A동 상부)
면 적	995.79㎡ (건물 연면적)	2,040㎡ (15m × 136m)
주요시설	종합체육관(배드민턴 4면) 헬스장(12명내 사용)	테니스코트 4면, 조명탑 4개
운영인력	7명 [행정 2, 현업 5(안내 3, 미화 2)]	2명 [현업 2]
소요예산	'21년 400백만원	-
세입·세출 예산 방법	- 세입 : 수입금 구 세입 처리 - 세출 : 민간이전 편성·지출	매년 위탁료 징수

'21년 운영수지 총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세입(A)	세출(B)	수익(A-B)	수지율 (A/B×100)
체 육 관	193,083	400,460	△207,377	48.21%
테니스장	105,235	94,500	10,735	111.36%

세입·세출 비교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세입(A)	세출(B)			수익(A-B)
		계	인건비	운영비 (감사보상포함)	
체 육 관	193,083	400,460	274,608	125,852	△207,377
테니스장	105,235	94,500	64,450	30,050	10,735

□ 세입예산(추계) : A

○ 세입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	망원나들목 체육관	망원나들목 테니스장
계	193,083	105,235
수강료(프로그램)	68,760	50,803
시설사용료	119,577	54,432
시설대관료	2,496	-
사물함	2,250	-

※ 세부내역 : 시설별 비용 추계(안) 참조

□ 세출예산(추계) : B

○ 세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	망원나들목 체육관	망원나들목 테니스장
계	400,460	94,500
인건비	기본급,수당	53,701
	연금부담금 등	10,749
운영비	기본경비	200
	프로그램운영 (일반운영비, 자산취득비 등)	5,356
	환경유지관리 (사무관리비, 공공운영비 등)	-
	강사보상금	24,494

※ 세부내역 : 시설별 비용 추계(안) 참조



# 망원나들목 체육관 비용 추계(안)-1년

(단위 : 원)

예산항목(구분)	상세내역	소요예산
<b>수지(A-B)</b>		<b>△207,376,743</b>
<b>세입(A)</b>	수강료, 시설 사용료	<b>193,083,600</b>
<b>세출(B)</b>	인력운영비, 운영비	<b>400,460,343</b>

세입예산(A)		193,083,600
<b>수강료</b>		<b>68,760,000</b>
유아체육-월8회	35,000원(월) × 25인 × 4반 × 12개월 × 75%	31,500,000
그룹PT-월8회	69,000원(월) × 15인 × 4반 × 12개월 × 75%	37,260,000
<b>시설 사용료(이용료)</b>		<b>124,323,600</b>
월사용료	{(28,500원 × 32인) + (40,000원 × 100인)} × 12개월 × 75%	44,208,000
일일사용료	{[(2,500원 × 800인) + (3,000원 × 384인)] × 12개월 × 75%} + {[(3,500원 × 1,280인) + (4,000원 × 512인)] × 12개월 × 60%}	75,369,600
시설대관료	32,500원/1시간 × 4일 × 2타임 × 12개월 × 75%	2,496,000
사물함	5,000원 × 50인 × 12개월 × 75%	2,250,000

세출예산(B)		400,460,343
<b>인력운영비</b>		<b>274,608,343</b>
인건비 - 기본급	행정직(8급 7호봉) 2,201,000원 × 12개월 × 1인 = 26,412,000원 행정직(9급 4호봉) 1,749,580원 × 12개월 × 1인 = 20,995,000원 현업직(안내) 1,850,000원 × 12개월 × 3인 = 66,600,000원 현업직(미화) 1,750,000원 × 12개월 × 2인 = 42,000,000원	156,007,000
인건비 - 수당	교통보조비 {(100,000원 × 2인) + (50,000원 × 5인)} × 12개월 정액급식비 {(130,000원 × 2인) + (80,000원 × 5인)} × 12개월 연장근무수당 행정직 : (통상임금) × 1.5/209 × 30시간 × 2인 현업직 : (통상임금) × 1.5/209 × 20시간 × 5인 명절휴가비 (기본급) × 50% × 2회 연장근무자 급량비 70,000원 × 12개월 × 2인 연차보상비 (통상임금)/209시간 × 8시간 × 5일 × 7인 직급보조비 105,000원 × 12개월 × 2인 국내여비 {(60,000원 × 2인) + (40,000원 × 5인)} × 2회 생활임금보전수당 {(219,307원 × 3인) + (319,307원 × 2인)} × 12개월 성과상여금 행정직 : (기본급) × 80% × 2인 현업직 : (기본급) × 50% × 5인	77,461,300
연금부담금 등	연금부담금 {(319,948원 × 1인) + (263,125원 × 1인) + (232,105원 × 3인) + (220,383원 × 2인)} × 12개월 4대보험 국민연금, 산재보험, 고용보험, 국민건강보험, 장기요양보험	41,140,043
<b>운영비</b>		<b>125,852,000</b>
기본경비	일반운영비 피복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, 부서운영업무추진비	3,100,000
프로그램 운영지원	일반운영비 홍보물 및 접수신청서 등 제작, 체육관 소모품 구입 등 자산취득비 체육관 시설물 보완비용(가림막 설치 등)	13,600,000
쾌적한 환경조성 및 유지관리	일반운영비 환경정비 소모품, CCTV용역, 기타 전산사용료, 자문수수료, 안전관리비, 서버운영비, 사무용품, 복합기 소모품 구매 등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	77,064,000
프로그램 운영지원 보상비	일반보상비 프로그램 강사보상비	32,088,000

#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비용 추계(안)-1년

(단위 : 원)

예산항목(구분)	상세내역	소요예산
<b>수지(A-B)</b>		<b>10,734,730</b>
<b>세입(A)</b>	수강료, 시설 사용료	<b>105,235,200</b>
<b>세출(B)</b>	인력운영비, 운영비	<b>94,500,470</b>
<b>세입예산(A)</b>		<b>105,235,200</b>
수강료		<b>54,432,000</b>
레슨비-주3회	150,000원(월) × 10인 × 3반 × 12개월 × 70%(이용률) × 80%(가용률)	30,240,000
레슨비-주2회	120,000원(월) × 10인 × 3반 × 12개월 × 70%(이용률) × 80%(가용률)	24,192,000
시설 사용료(이용료)		<b>50,803,200</b>
일일사용료	3,384,000원(코트3면 월수입 합계) × 12개월 × 80%(가용률)	32,486,400
전용사용료	1,908,000원(코트1면 월수입 합계) × 12개월 × 80%(가용률)	18,316,800
<b>세출예산(B)</b>		<b>94,500,470</b>
인력운영비		<b>64,450,070</b>
인건비 - 기본급	현업직 1,850,000원 × 2인 × 12개월	44,400,000
인건비 - 수당	교통보조비 50,000원 × 2인 × 12개월	9,301,250
	정액급식비 80,000원 × 2인 × 12개월	
	연차보상비 1,980,000원/209시간 × 8시간 × 5일 × 2인	
	국내여비 40,000원 × 2인 × 2회	
	생활임금보전수당 219,307원 × 2인 × 12개월	
연금부담금 등	연금부담금 214,328원 × 2인 × 12개월	10,748,820
	4대보험 국민연금, 산재보험, 고용보험, 국민건강보험, 장기요양보험	
운영비		<b>30,050,400</b>
기본경비	일반운영비      피복비	200,000
프로그램 운영지원	일반운영비      홍보물 및 접수신청서 등 제작, 사무용품 구입 등	5,356,000
	공공운영비      각종 공과금	
프로그램 운영지원 보상비	일반보상비      프로그램 강사보상비	24,494,400